

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안내문(도배·장판 공사용)

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도배장판 공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. 도배장판 공사를 원하는 입주자는 전세계약 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, 공사업체 관계자께서도 아래사항에 유의하셔서 시공 및 비용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도배·장판 공사 지원내역

- 도배·장판 공사는 입주자가 직접 시공업체에 의뢰
- 지원금액 : 부가세 포함하여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- 전세임대 수혜기간(20년)동안 10년마다 1회씩 지원 가능
- 시공업체 선정 : 일반과세자-세금계산서 발행 / 간이과세자-현금영수증 발행

2. 도배·장판 공사 시 유의사항

- 공사 전에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여 사전협의 후 공사에 착수
 - ➡ 임의로 시공하시면 공사비 지급 불가
- 공사 전·후 사진을 촬영
 - ➡ 현관 입구에서 전체적으로 공사 전·후 모습을 같은 위치에서 비교 가능하도록 촬영
 - ➡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비스듬히 촬영하여 시공지점이 가급적 넓게 보이도록 촬영
 - ➡ 촬영지점은 모서리진 곳, 창문·방문이 보이는 곳 등 특이지점을 선정
 - ➡ 공사 전·후에 달라진 모습이 비교가 가능하도록 촬영
 - ➡ 도배지 및 장판 자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

3. 비용청구시 제출 서류

- 세금계산서
 - ➡ 공사비 총액(부가세 포함)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부담분(60만원)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(공사비 : 545,455원, 부가세 : 54,545원)
 - ➡ 6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입주자에게 청구
 - ➡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우편으로 보내는 당일로 기재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도배·장판 업체 통장 사본
- 견적서
- 교체공사 완료확인서
 - ➡ 입주자의 서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입주자는 하자 여부를 확인 후 서명
 - ➡ 공사비 내역에는 공란이 없이 작성
- 공사 전·후 촬영한 사진대지

4. 도배·장판 관련 문의사항

- 지역별 담당 법무법인으로 문의(7페이지 참조)

※ 관련 서식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(www.gh.or.kr)에서 ❶ 정보마당 ▶ ❷ 관련서식자료실 ▶ ❸ 전세임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도배·장판 교체공사 완료확인서(1)

입주자 확인		
확인일시	월	일
확인자		
서명		

■ 공사비 내역

주소					
등기부상면적		(㎡)	입주자성명		전화번호
공사내역		구분	제품명(코드번호)	수량	공사비
		벽지		(㎡)	원
		바닥재		(㎡)	원
		부자재			원
		인건비			원
		소계			원
		총공사비(부가세 포함)			원
공사업체	상호명		대표자		전화번호
비용부담	총 공사비	원	경기주택도시공사	원	입주자

■ 입주자 및 시공업체 유의사항

- 도배·장판 교체공사비는 부가세 포함 60만원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해드리며, 6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.
- ※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
 - 공사비 총액(부가세 포함)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부담분만 발행.
 -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우편발송일로 기재.
- 시공 전에 반드시 견적서(자재명, 수량, 단가를 포함한 상세견적)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보내고 유선으로 시공 가능 여부에 대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시공하셔야만 지출이 가능합니다
- 시공 후 아래의 붙임서류(사진)와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, 견적서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. ※ 공사 전·후 비교 가능한 사진을 붙여야 함

〈우편 보내실 주소〉

- (16512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266번길 22, 4층 서린 법무법인
- (02068)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56길 37 코러스 법무법인
- (06123)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42, 흥국생명빌딩 7층 덕수 법무법인
- (07055)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40, 402호(대방동, 경원빌딩) 씨케이 법무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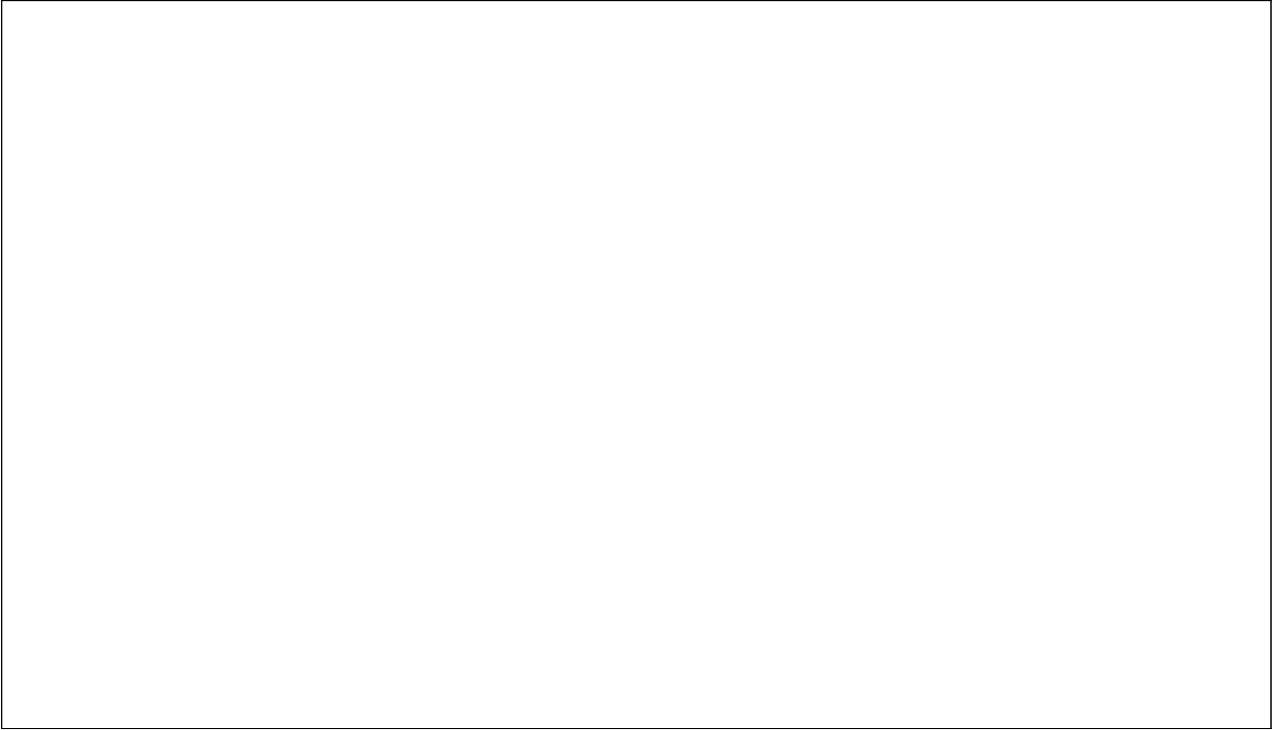
※ 지역별 담당 법무사(법무법인) 확인은 7페이지 참조

-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 확인란에 서명해주시기 바라며, 공사상 하자에 대해서는 처리절차를 업체와 직접 상의하셔야 합니다.(명함 수령)
-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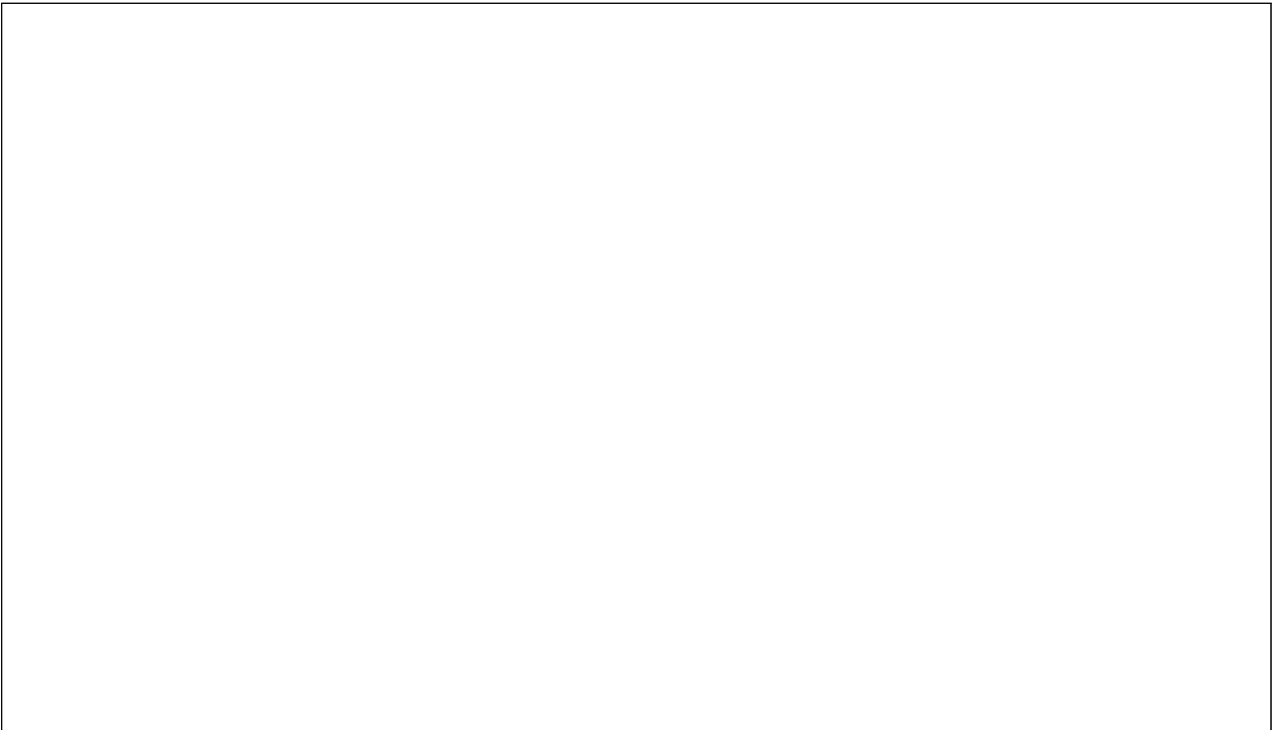
도배·장판 교체공사 완료확인서(2)

공사일 : 년 월 일

<공사 전 사진-전경/거실/방1/방2/방3>



<공사 후 사진-전경/거실/방1/방2/방3>



◆ 도배장판 시공 안내

- 도배장판 교체공사비는 부가세 포함 60만원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해드리며, 6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.
 - ※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
 - 1. 공사비 총액(부가세 포함)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부담분만 발행.
 - 2.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우편발송일로 기재.
- 시공 전에 반드시 견적서(자재명, 수량, 단가를 포함한 상세견적)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보내고 유선으로 시공 가능 여부에 대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시공하셔야만 지출이 가능합니다.

<도배 · 장판 시공완료 후 구비서류>

1.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
2. 통장사본
3. 견적서
4. 사업자등록증 사본
5. 도시공사 도배 · 장판 교체공사 완료확인서 - 입주자 확인 서명 받으셔야 합니다
6. 공사 전 · 후 비교 가능한 사진 첨부

※ 지역별 담당 법무법인

권역	지역	법무법인	전화	FAX
고양권	광명시, 부천시, 시흥시 고양시, 김포시, 파주시	덕수 법무법인	02-554-5302 070-4464-7611	02-6008-5306
남양주권	가평군, 구리시, 남양주시 동두천시, 양주시, 양평군, 연천군, 의정부시, 포천시	씨케이 법무법인	02-6219-7005 02-6219-7006	02-6003-0280
성남권	과천시, 광주시, 성남시, 안양시, 여주시, 용인시, 의왕시, 이천시, 하남시	코러스 법무법인	02-2174-2993 02-2174-2994	02-6280-7700
수원권	군포시, 수원시, 안산시, 안성시, 오산시, 평택시, 화성시	서린 법무법인	031-213-1115 031-213-3020	031-360-6380